

충주시의회 제178회 정례회
2013. 6. 13(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517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8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19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1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22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3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4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25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강명권 의원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홍진옥 의원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총무과장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총무과장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기획감사과장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기획감사과장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기획감사과장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정보통신과장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06.05	2013.06.05	2013.06.12	2013.06.12	세정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립택견단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견의 원형보존 및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시립택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택견단 상임 시범단 수석단원제 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
 -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원 1명을 둠.

-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승급 조항 신설(안 제5조)
 - 단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함.
 - 단원은 근무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휴가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실시도록 관련조항 정비(안 제16조)
- 징계에 선동 및 집단행동한 자 신설 (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정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 인사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여 공로자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대상 특별 부문 신설(안 제2조제6호)
- 특별 부문 대상자 자격 신설(안 제3조후단)
 -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관외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발전에 크게 노력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포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
 - 충주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기관 단체 ⇒
충주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기관, 단체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시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안 제7조)
-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8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일반 시민의 참여 보장
- 여성 위원 우선 위촉(위촉직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
- 한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충복 위촉 제한
- 한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두 번만 연임 가능
-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명단, 회의, 회의록 공개
(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총괄 관리 부서와 담당 부서의 역할 규정(안 제15조)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안 제16조)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촘촘하고 폭 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여 맞춤형 One-stop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기획행정국 → 안전행정국
- 부서 신설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 안전총괄과 : 안전행정국에 신설 (재난관리과 폐지)
 - 허가민원과 : 경제건설국에 신설
- 분담업무의 조정
 - 안전총괄, 재난, 민방위에 관한 사항 ⇒ 안전행정국
 -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국에서 삭제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총괄과와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91명 → 1,293명(+2)
 - 집행기관 : 1,272명 → 1,274명(+2)
 - 일반직 : 1,052명 → 1,057명(+5)
 - 기능직 : 174명 → 171명(△3)
 - 기타 : 46명(현행과 같음)
 - 의회사무국 : 19명(현행과 같음)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
 -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 충주시 정보화 조례
- 정보화 추진 심의기구 설치·운영 등(안 제6조)
 - 충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충주시 정보화위원회
-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등(안 제9조~제14조)
-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안 제15조~제18조)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3. 1. 1.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포상금 지급 조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 대상 (안 제2조)
- 지급 기준 (안 제3조)
 - 세원 빨굴, 체납액 징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4조)
 - 부시장(위원장), 기획행정국장(부위원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 포상금 지급 신청 (안 제5조)
- 포상금 지급 방법 (안 제6조)
- 포상금 환수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택견단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처우 개선하고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에는 상임단원 중 수석단원 1명을 두어 단원 관리와 단원 화합 도모를 통해 기량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는 현행 조례에 단원의 자격만 명시되어 있고 위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같은조 제3항에는 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을 규정하고 근무 기간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택견전수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단원의 사기양양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6조에는 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원의 휴가 및 연가를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에는 규칙에 선동 및 집단행동 금지위반에 대한 징계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선동 및 집단행동한 자를 신설하여 징계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택견단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처우 개선하고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에는 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 활용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청룡사지, 미륵대원지, 선사유적 박물관, 누암리 고분군, 중앙탑공원, 충주박물관, 충렬사, 관아공원, 세계무술공원, 충주고구려비전시관, 탄금대 등 11개소에서 총 29명이 활동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항을 조례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시상부문을 “문화 예술 언론부문”, “교육 체육 부문”, “산업 경제부문”, “사회봉사 윤리부문”, 농림 축산부문 등 5 개 부문에서 충주를 빛낸 외부인사에게도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특별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충주시 발전에 공로가 큰 주요인사가 충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없어 관외거주자에게 시민대상 특별부문을 수여할 수 있도록

- 안 제2조 제6호에 특별부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 후단에는 특별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관외 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신설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안과 같이 충주를 빛낸 외부인사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특별부문을 신설하여 충주를 빛낸 외부인사의 자긍심 고취와 시정발전에 참여 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대상의 범위를 공무원, 시민, 기관 단체에서 충주시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을 빛낸 관내·외 거주자 모두에게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자부심 고취와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 사회에 공적이 많은 관외 거주자에게도 포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시민 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5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부서는 총괄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9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 특정인의 과도하게 장기간에 걸친 참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5조에는 위원회 및 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전체의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2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면서 현행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우리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주민편의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총괄업무와 특사경총괄 업무, 풍수해 종합대책과 재난관리업무, 지역 재난방지 종합계획 수립, 민방위 업무를 신설하였음.
- 또한, 경제건설국에는 맞춤형 One-stop 민원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농정, 산림 등 인·허가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와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허

가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원활한 추진과 직렬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 기능직은 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2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은 총 5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291명에서 1,293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에 따라 우리시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충주시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충주시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 그밖에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정보화 교육 등 시민들이 정보접근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법의 통폐합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 17조 중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의 고시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음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 도모와 제도의 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신설되고
-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8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4조에는 “충주시 공적십사위원회”에서 대행한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구성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업무연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의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대장의 비치,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포상금 지급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며 조금씩 늘어남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수는?

○답변 : 평균 15일 근무하고 있음.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시민대상은 한번 수상하면 다시 수상하지 못하는가?

○답변 : 동일분야는 다시 받지 못하고 다른 분야는 가능함.

▶질의 : 특별부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답변 : 분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 현재 우리시 위원회의 수는?

○답변 : 103개 위원회가 있음.

▶질의 : 개최 실적이 없거나 현실성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 : 위원회 성격을 파악하여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거나 폐지를 하겠음.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이전에 폐지되었던 허가민원과를 다시 설치하는 이유는?

○답변 : 이전에는 업무가 2원화가 되었으나 협조가 잘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부서 전체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 : 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한 이유는?

○ 답변 :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함.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4)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5)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8)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수정가결 |

※ 안전행정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부조직법 개정)

- | | |
|----------------------------------|--------|
| (9)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6. 붙임

-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